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결사항을 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의 문구 및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잡종재산”을 “일반재산”으로 문구 수정

나.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사항을 “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”를 “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2조)

다. “행정 및 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통합

라. “입방미터”를 “세제곱미터”로 문구 수정

4. 관련법령

○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5조

○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10조

○『국가표준기본법』제10조

5. 검토의견

▢ **본 개정조례안은**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결사항을 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의 문구 및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“잡종재산”을 일반재산”으로 문구 수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사항을 “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”를 “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“행정 및 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통합하고 “입방미터”를 “세제곱미터”로 수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